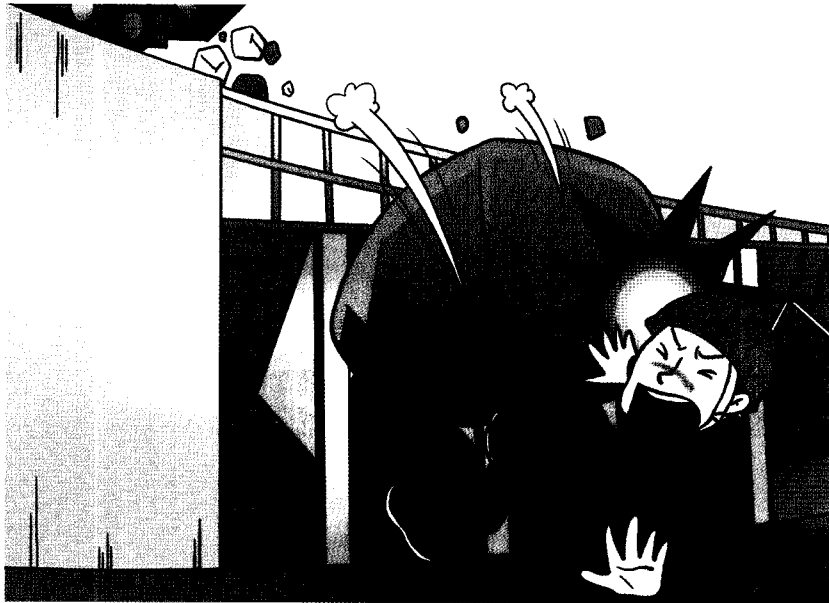


# 채석장 낙하된 파쇄석에 충돌



업종 : 토사석 채취  
 생산품 : 골재, 아스콘  
 가해물 : 파쇄석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1명



## 1. 재해개요

골재채석장에서 덤프트럭에 상차한 채취석을 돌분쇄용 Hammer-Crusher설비 Hopper에 붓는 작업 중 Hopper하부에서 잔석 청소작업 중인 피재자가 낙하 비래된 파쇄석에 충돌, 협착됨. 퇴근시간이 지나도 피재자가 나타나지 않아 동료들이 찾던 중 파쇄석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어 있는 피재자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호흡이 정지되고 사망한 재해임

## 2. 재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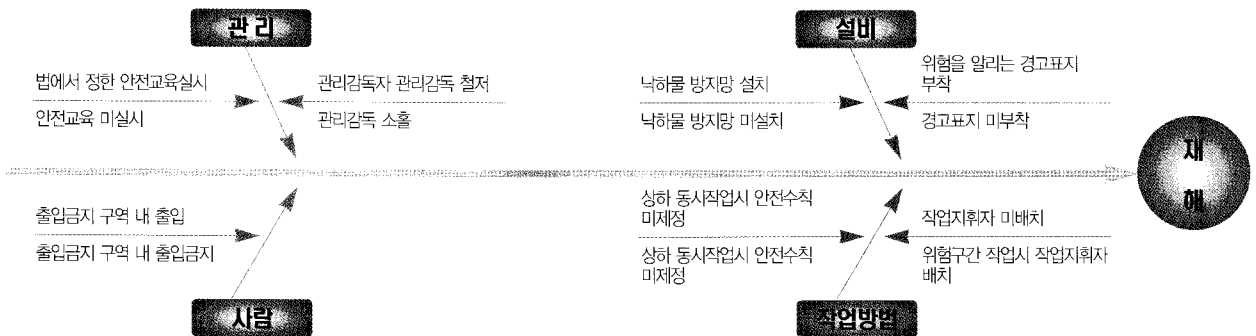
- (1) Hammer-Crusher설비 Hopper 단부주변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 (2) 출입 금지 구역 내 작업자 출입.
- (3) 위험구간 작업 시 작업지휘자 미 배치.
- (4) 상하 동시작업 시 작업안전수칙 미제정.
- (5) 정기안전교육 미 실시

## 3.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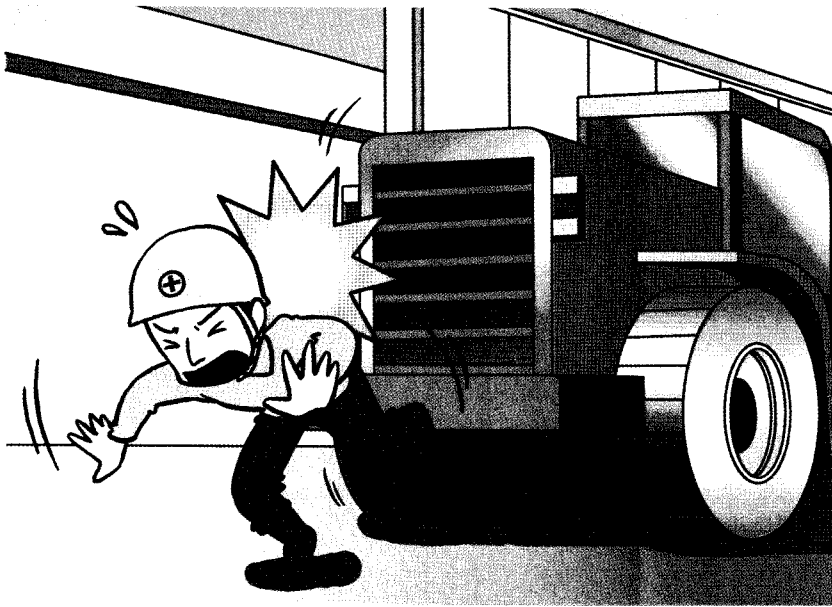
- (1) 낙하물에 의한 위험구간 내 낙하물방지망 설치 후 작업실시.
- (2) 위험구간 출입 금지토록 방책을 1.8미터 이상의 높이로 보강 설치
- (3) 위험구간 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 (4) 상하 동시작업에 대한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주지
- (5) 정기 안전교육 실시

## 4. 법 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후진하는 페이로더에 충돌



업종 : 제강 압연업  
 생산품 : 압연제강  
 가해물 : 페이로더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1인



## 1. 재해개요

청소작업을 하기위해 걸레를 가지고 제강 작업장 전기로 옆 세척장으로 걸어가던 피재자가 슬러그를 신고 급하게 후진하는 페이로더 후미와 충돌하여 바닥과 페이로더 바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2. 재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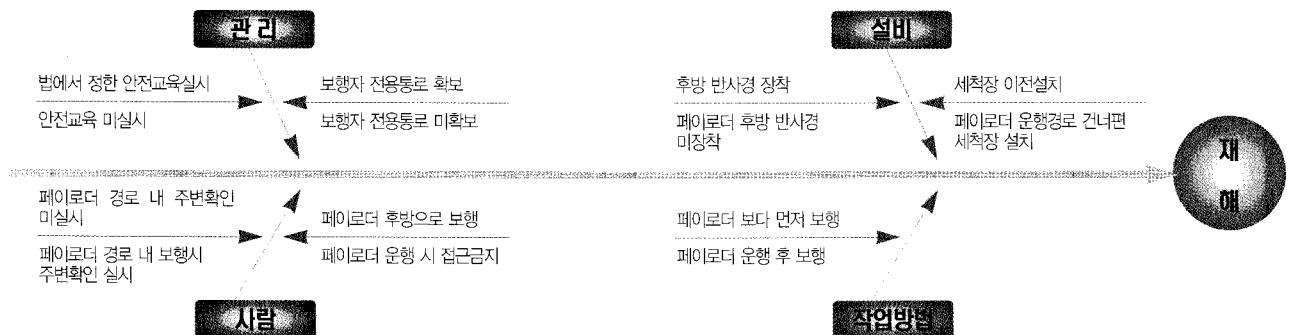
- (1) 보행자 전용통로 미확보
- (2) 페이로더 후방으로 보행
- (3) 페이로더 운행 경로 내 보행시 주변확인 미실시
- (4) 페이로더 운행 경로 건너편에 세척장 설치
- (5) 페이로더 후방 반사경 미장착으로 후방시야 미확보
- (6) 정기안전교육 미실시

## 3.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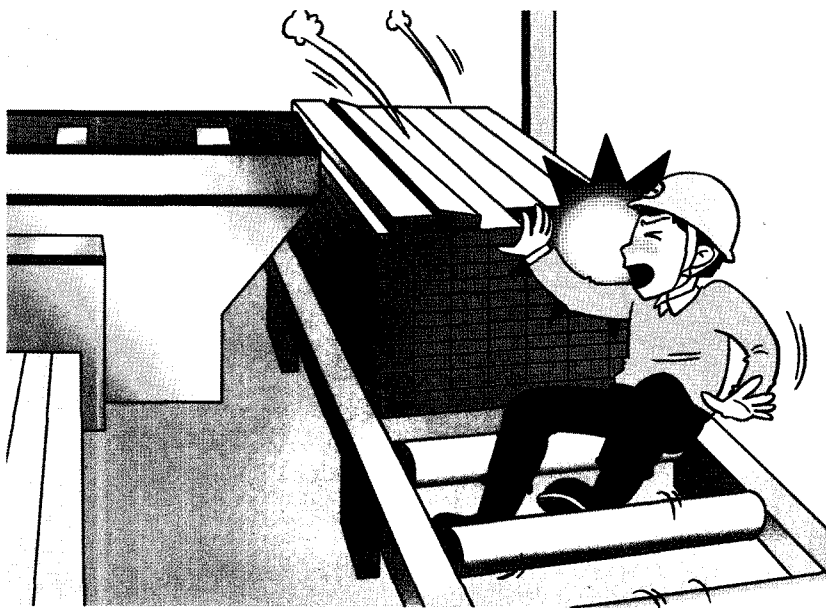
- (1) 보행자 전용통로 확보 및 도색
- (2) 페이로더 운행시 접근금지
- (3) 페이로더 운행 경로와 교차하는 곳 보행시 주변 확인 실시
- (4) 세척장으로 통하는 길이 페이로더 운행 경로와 교차하지 않도록 이전 설치
- (5) 페이로더 후방 반사경 장착
- (6) 정기안전교육 실시

## 4. 법 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송 로울러와 판재사이에 협착



업종 : 목재판 제조  
 생상품 : 나무드럼  
 가해물 : 이송로울러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 1. 재해개요

정규 작업시간이 끝난 야간작업 시 피재자가 제재라인 자동판재 적치기에서 판재적치 작업 중(판재규격 : 3630×150×30) 최상단의 판재가 영키자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적치된 판재와 이송로울러 사이로 들어가 정리작업을 실시. 판재 상단이 정리되자 자동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로울러가 자동으로 구동되어 판재다발(무게1.5톤)과 이송로울러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됨. 동료 근로자가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 수술하였으나 내장파열로 사망한 재해임.

## 2. 재해원인

- (1) 비정상작업시 주전원 미차단
- (2) 이송로울러 사이에 들어가 작업실시
- (3) 수공구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 실시
- (4) 비상정지버튼, 광전자식안전장치 등 미설치

(5) 근로자 집중력 저하시간에 관리감독 소홀

## 3. 예방대책

- (1) 비정상작업시 주전원 차단
- (2) 이송로울러 내 진입금지
- (3) 판재 상단정리시 수공구 등 보조기구 사용
- (4) 비상정지버튼, 광전자식안전장치 등 설치
- (5) 야간작업시 관리감독 철저

## 4. 법 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